

군포시의회 공고 제2021 - 60호

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

제25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「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.

2021년 12월 29일

군 포 시 의 회 의 장

군포시의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친 「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」을 이에 공포한다.

2021년 12월 29일

군 포 시 의 회 의 장



군포시의회 규칙 제27호

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

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71조”를 “지방자치법 제83조”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제63조제1항”을 “제72조”로 한다.

제17조 중 “법 제65조제1항”을 “법 제75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발의의원과 찬성의원”을 “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”으로, “발의의원의”를 “발의 의원의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발의의원이”를 “발의 의원이”로, “발의의원 1명”을 “발의 의원 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공표 또는”을 “공표하거나”로 한다.

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. 다만, 의원은 2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

제21조의2제1항 중 “법 제66조의2제1항”을 “법 제77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40조를 삭제한다.

제4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(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 등)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.

다만, 지방자치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.

제43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때는 가결 되었음”을 “때에는 가결되었음”으로 하며, 같은 항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이 경우,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단,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.

제5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-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. 다만,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56조의2제1항 중 “법 제15조의2제2항”을 “「주민조례발안법」 제13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“법 제15조의2”를 “「주민조례발안법」 제13조”로 한다.

제5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6조의3(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) ① 「주민조례발안에 관

한 법률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.

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

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56조의2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,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.

제5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6조의4(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) ① 의장은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는 경우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6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73조제1항 중 “법 제79조”를 “법 제91조”로 한다.

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5조의2(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.

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상 9명 이하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.

1.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2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3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·진술·자문·연구·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4.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

제7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5조의3(의견수렴)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.

제85조제1항 중 “법 제86조”를 “법 제98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“법 제83조제2항”을 “법 제99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<u>지방자치법 제71조</u> 등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의회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<u>지방자치법 제83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5조(회의에 관한 선포) ① (생략) ② 의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 시간으로부터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<u>제63조제1항</u> 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. ③ (생략)	제15조(회의에 관한 선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72조</u> ----- ----- -----.
제17조(회의의 비공개) <u>법 제65조 제1항</u> 단서의 규정에 따라 3명 이상의 의원이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경우, 해당 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않고 표결한다. ②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	제17조(회의의 비공개) <u>법 제75조 제1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	② -----

때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
분하되, 해당 조례안 제명의 부
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
여야 한다. 다만, 발의의원이 2
명 이상이면 대표 발의의원 1명
을 명시하여야 한다.

③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
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
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
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
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.

제21조의2(조례안 입법예고) ①
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
출된 때는 법 제66조의2제1항에
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
그 취지·주요 내용·전문을 공
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제
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
다.

② ~ ⑥ (생략)

제40조(표결의 선포) ① 표결할
때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
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
다.

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는
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
언할 수 없다.

---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---

--- 발의 의원의 ---

-----, ----- 발의 의원이 --

----- 발의 의원 1명

③ -----

----- 공표하거나

제21조의2(조례안 입법예고) ① -

----- 법 제77조제1항에 -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제43조(표결방법) ① 표결할 때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, 기립이나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.

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.

③ 의장은 안전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가결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. 그러나, 이의가 있을 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.

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.

제50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

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. 그러나 비밀이 필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

제43조(표결방법)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(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 등)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. 다만, 지방자치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.

<삭 제>

③ -----

--- 때에는 가결되었음-----
-----. 이 경우,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단,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.

<삭 제>

제50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

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. 다만,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

의장이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
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
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
아니할 수 있다.

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
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
관하여 열람·복사등을 신청한
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
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
된다.

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
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
하거나 전재·복사하게 하여서
는 아니된다.

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
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.
다만,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
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
가 소멸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
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
에 게재할 수 있다.

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
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.
제56조의2(주민청구조례안의 심
사) ① 의장은 법 제15조의2제2

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제56조의2(주민청구조례안의 심
사) ① ---- 「주민조례발안

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(이하 '청구인의 대표자 등'이라 한다)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 취지(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·답변을 포함한다)를 들을 수 있다.

② ~ ④ (생략)

⑤ 법 제15조의2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본회의의 심사절차는 제27조제1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'제안자'는 '청구인의 대표자' 등으로 본다.

<신설>

법 제13조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「주민조례발안법」 제13조

제56조의3(주민조례청구 청구인

명부 이의신청) ①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.

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

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56조의2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, 그 외의

<신 설>

<신 설>

제73조(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
답변서 제출) ① 의장은 법 제7
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
심사 청구가 있을 때는 그 청구
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
고 그 부분을 피심의원에게 송
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
제출하게 한다.

② (생 략)

<신 설>

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.

제56조의4(주민조례청구의 수리
및 각하) ① 의장은 「주민조례
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
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
각하를 하려는 경우 위원회의
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
하려는 경우 대표자에게 의견제
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
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소집 및
결정절차는 제56조의3제2항 및
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73조(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
답변서 제출) ① ---- 법 제91
조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5조의2(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
구성·운영) ① 위원회는 의원의
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

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
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
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.

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
7명 이상 9명 이하의 민간전문가
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
에서 호선한다.

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
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
연임할 수 있다. 다만 위원의 사
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
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
으로 한다.

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
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
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
문에 참여할 수 없다.

1.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
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2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
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
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3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
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·
진술·자문·연구·용역 또는 감
정을 한 경우
4.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

<신 설>

제85조(징계의 요구와 회부) ①
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
징계대상의원(이하 “징계대상
자”라 한다)이 있을 때는 이를
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
원회에 회부한다.

② (생략)

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
징계를 요구할 때는 재적의원 5
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
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
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
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모
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
할 때는 찬성위원을 요하지 아
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
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.

④·⑤ (생략)

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
이 있는 경우

제75조의3(의견수렴) 위원회는 윤
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 전
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
을 들어야 하며, 그 의견을 존중
해야 한다.

제85조(징계의 요구와 회부) ① -
----- 법 제98조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법
제99조제2항-----

-----.

④·⑤ (현행과 같음)